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6. 5(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2. 6. 7.
- 다. 상정일자 : 2002. 6. 17(제201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교육국장 조봉래)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의거
- 충청북도과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제1조에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등이 제2조와 제3조에
- 동 심의회 기능이 제4조에
- 끝으로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었으며
- 동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동년 5월 31일 심의하여 제2조의 심의회 구성인원과 임기를 일부 수정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먼저, 동조례(안)의 제1조를 보면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을 명시하지 않아 그 취지가 명확하지 못하며
- 동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구성인원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제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의결한 사유 및 그 적정성의 여부
- 동 조례(안) 제5조에서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심의회의 위원장이 의장으로 표현된 점
- 동 조례(안) 제6조에서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 동 조례(안) 제2조 일부 조문상의 용어가 명료하지 못한 점
 - 제3항 제2호의 인정하는 人士 (⇒ 者)
 - 제4항의 임기는 당해 職 (⇒ 職位)
- 동 조례(안) 제7조는 수당과 여비를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과 제2호에 의한 외부 위촉인사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단서규정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회계관계자 및 관계 담당자가 수당·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등
-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제1조에 목적 명시, 제2조의 심의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의 변경, 제5조 심의회 회의의 소집사유 및 시기 명시, 간사를 당연직 공무원으로 함, 일부 조문상 명확히 하지 않은 용어 수정,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 등을 명시하여
- 동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 및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을 “이 조례는 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으로 한다.
- 안 제2조 제1항 중 “15인”를 “9인 이상 15인”으로, 안 제2조 제3항 제2호 “인사”를 “자”로, 안 제2조 제4항 “3년”을 “2년”으로, “직”을 “직위”로 한다.
- 안 제5조 제1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그 회의를 주재한다”로 하며, 제2항에는 “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한다.
- 안 제6조 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이 되며”로 한다.
- 안 제7조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나. 수정(안)조문대비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을 “이 조례는 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으로 한다.
- 안 제2조 제1항 중 “15인”를 “9인이상 15인”으로, 안 제2조 제3항 제2호 “인사”를 “자”로, 안 제2조 제4항 “3년”을 “2년”으로, “직”을 “직위”로 한다.
- 안 제5조 제1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그 회의를 주재한다”로 하며, 제2항에는 “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한다.
- 안 제6조 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이 되며”로 한다.
- 안 제7조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2002. 6. 17 제 100 호
----------	------------------------

제안년월일 : 2002. 6. 17

제안자 : 최중복의원

1. 수정이유

- 제1조에 목적 명시, 제2조의 심의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의 변경, 제5조 심의회 회의의 소집사유 및 시기 명시, 간사를 당연직 공무원으로 함, 일부 조문상 명확히 하지 않은 용어 수정,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 등을 명시하여
- 동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 및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을 “이 조례는 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으로 한다.
- 안 제2조 제1항 중 “15인”를 “9인이상 15인”으로, 안 제2조 제3항 제2호 “인사”를 “자”로, 안 제2조 제4항 “3년”을 “2년”으로, “직”을 “직위”로 한다.
- 안 제5조 제1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그 회의를 주재한다”로 하며, 제2항에는 “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한다.
- 안 제6조 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이 되며”로 한다.
- 안 제7조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기안안 조문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과학교육진흥법----- ----- -----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u>15인 이내</u>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학교육 진흥업무와 관련된 본청의 과장급 이상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 2.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권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u>당해 조에</u> 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u>9인 이상, 15인 이내</u> 로 구성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④() 1. () 2. ----- 인정하는 <u>자</u> 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u>당해 조항에</u> 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의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
제4조(기능)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여하는 사항 3. 그밖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 3. ()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u>그 의장이 된다.</u> < 신 설 > ②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①----- <u>그 회의를 주재한다.</u> ②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u>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u> ③(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u>위원장이</u>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u>과학교육담당과장학관</u> 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u>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u>